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예산 모두 배정 및 집행보류 해제 등〉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0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예산 모두 배정 및 집행보류 해제 등 (안 제43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환의원 등 35인

나. 발 의 일 : 2024. 7. 5.

다. 회 부 일 : 2024.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Ⅲ. 검토의견

1.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예산 모두 배정 및 집행보류 해제 등 (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 예산의 배정(§43) - 기재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기재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 배정 시 감사원에 통지 - 기재부장관은 필요 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배정 가능 - 기재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위 예산배정계획이 아니라 개별사업계획 검토 결과에 따른 예산 배정 가능 - 기재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위 예산배정계획 조정, 예산배정 유보,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조치 가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예산의 배정(§43)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재부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제출 - 기재부장관은 수시배정·배정유보 등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예산을 모두 배정하여야 함 - 집행보류 조치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을 기한으로 함 - 기재부장관은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 그 사유를 제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① 대통령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② 수시배정·배정유보 등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집행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며, ③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예산이 확정된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¹⁾,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²⁾ 승인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는 순서로 예산배정이 이루어짐.

한편,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예산배정절차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한 정부의 예외적·자율적인 집행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³⁾.

1) 「국가재정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현행법 제43조제3항)은 외국 지급 경비, 특수활동 소요경비, 여비, 조기집행 필요 공공사업비 등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고,

‘수시배정’(현행법 제43조제4항)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며⁵⁾⁶⁾,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현행법 제43조제5항)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는 제도이고⁷⁾,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현행법 제43조제5항)는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 예산배

⑤ 기획재정부장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예산의 배정)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5) 사업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해 예산 배정을 보류하면, 해당 중앙관서가 사업계획의 수립 등 요건을 충족해 예산배정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함,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 p. 389.

6) 현행법에는 수시배정제도를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기금에 대해서도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선정기준 역시 수시배정사업과 동일함. 동 검토보고서의 수시배정사업 현황에는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포함함.

7)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정을 유보(배정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집행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제도임.

이 중 수시배정·배정유보·집행보류는 정부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등을 위해 예산의 배정 또는 집행을 통제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수시배정 및 배정유보·집행보류 선정기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수시배정	배정유보·집행보류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① 예산 편성시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① 사업 근거 법령의 제·개정, 권리의무관계·외국과의 계약체결·공모절차 등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②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③ 지방비 분담 또는 민간부담 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못할 경우
③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기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집행되는 사업	④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⑤ 세입징수실적이 당초 세입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⑥ 집행점검 및 예산낭비신고사례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재원분담 주체간의 분담비율이 미정인 사업	⑦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업
⑥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⑧ 기타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⑦ 지방비 또는 민자 확보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업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⑧ 사업여건 변화로 타당성재조사, 환경영향재평가, 부처간 사전협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정소요사업	
⑨ 사업여건 변화로 중요한 사업 내용이 바뀌는 등 검토가 필요한 사업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⑩ 회계연도 중 사업구조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	
⑪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수시배정은 사업의 기본구성 법률 등 조건 충족 여부, 자원분담 방안 등이 구체화 되지 못한 사업을 검토하여 매년 배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다수 부처의 다수 사업을 대상으로 제도화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배정유보 등이 필요한 일부 예외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수시배정 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연 도	부처수	세부 사업수	대상액 (A)	배정액 (B)	배정률 (B/A)	집행액 (C)	집행률 (C/B)
2021	26	105	26,472	25,216	95.3	23,706	94.0
2022	25	81	45,982	45,527	99.0	45,038	98.9
2023	22	69	159,003	157,624	99.1	157,517	99.9

*기금에 대한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사업'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일부내용 발췌)

[최근 3년간 배정유보 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연 도	부처수	세부 사업수	대상액 (A)	배정액 (B)	배정률 (B/A)	집행액 (C)	집행률 (C/B)
2021	-	-	-	-	-	-	-
2022	10	35	1.3	0	0	0	0
2023	6	7	0.9	0	0	0	0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3년간 집행보류 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연 도	부처수	세부 사업수	대상액 (A)	배정액 (B)	배정률 (B/A)	집행액 (C)	집행률 (C/B)
2021	-	-	-	-	-	-	-
2022	-	-	-	-	-	-	-
2023	2	10	1,510,489	1,510,489	100	1,324,831	87.7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수시배정과 관련하여서는 수시배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의 상당수가 국회에서 증액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국회 증액사업 중 일부 사업은 예산액을 전혀 배정받지 못하는바⁸⁾, 국회 증액사업은 예산안 심사 시 정부의 동의 하에 증액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집행이 필요하며, 제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배정사업 내역의 국회 제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⁹⁾.

[수시배정사업 중 국회 증액사업 현황(사업 수 기준)]

(단위: 개, %)

연도	재정사업			수시배정사업		
	전체 (A)	국회 증액사업 (B)	비중 (B/A)	전체 (C)	국회 증액사업 (D)	비중 (D/C)
2021	8,797	752	8.5	105	71	67.6
2022	9,318	748	8.0	81	65	80.2
2023	9,505	704	7.4	69	56	81.2

주: 세부사업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또한, 수시배정사업에 대하여 4분기에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월되는 등 집행부진이 일어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¹⁰⁾.

8) 2023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69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대상액을 전액 배정받지 못하였는데, 이 중 17개 사업이 국회 증액사업이었음(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9)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2024. 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2024. 8.

10)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2024. 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2024. 8.

[2023년 수시배정사업 배정액 대비 집행률 부진 사업]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대상액 (A)	배정액 (B)	집행액 (C)	배정률 (B/A)	배정액 대비 집행률 (C/B)	배정일
문화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가능성 연구용역)	300	300	-	100.0	-	'23.10.19.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2,700	2,700	-	100.0	-	'23.12.21.
국토부	철도기본계획수립	7,030	2,800	767	39.8	27.4	'23.6.19.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용(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	1,000	1,000	-	100.0	-	'23.10.12.
해수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구축 (어선건조지원센터(고흥) 구축)	500	500	-	100.0	-	'23.12.22.
산림청	정원조성과정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4,850	4,850	12	100.0	0.2	'23.5.4.
여가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1,000	1,000	9	100.0	0.9	'23.6.14.

주 1) 배정액 대비 집행률 30% 미만

2) 밑줄 굵은 표시는 4분기 배정

3) 2023년 말 기준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2023년 수시배정사업 배정액 대비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을 살펴보면 총 7건 중 4건이 4분기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은 사업예산을 연말인 2023년 12월에 배정함으로써 전액 이월되었고,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건조지원센터(고흥) 구축’ 사업예산 5억원도 2023년 12월에 배정하여 실집행 없이 전액 이월되었음. 환경부 소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 사업은 4분기인 10월에 배정함으로써 설계공모 입찰공고

실시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10억원의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음¹¹⁾.

집행보류와 관련하여서는, 2023년 집행보류된 총 10건의 사업은 전부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정부는 2023년 9월 발표한 「세수재추계 및 재정대응방향」을 통해 세수결손에 대응하여 세계잉여금과 기금(외국환평형기금 등)의 여유재원 활용,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에 따라 대응하였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약 18.6조원을 집행보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미교부하였음¹²⁾.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¹³⁾은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교부세 미배정은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집행보류 등의 대상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지방교부세와 같은 법정 의무지출도 집행보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¹⁴⁾.

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2024. 8.

12) 기획재정부는 2024년 9월 및 10월 국회에 보고한 ‘최근 경제 동향과 세수재추계 등 주요 현안’,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통해 2024년에도 작년 경기둔화 등의 이유로 29.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국세 부족분(29.6조원)을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14~16조원) + 교부세 집행보류(△6.5조원) + 통상적 불용(△7~9조원)’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

13)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14)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4. 7.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수시배정 또는 배정유보·집행보류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해당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¹⁵⁾에서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회가 확정된 예산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배정을 유보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명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수시배정 또는 배정유보·집행보류는 사업의 시행여부·시행시기 및 사업금액을 기획재정부가 재심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배정유보·집행보류 대상사업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배정 또는 집행토록 할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의도를 왜곡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수시배정 또는 배정유보·집행보류 등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바, 개정안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수시배정·배정유보·집행보류 등의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집행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5)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수시배정·배정유보·집행보류의 지정요건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집행보류 조치를 해제할 경우 효율적인 집행에 제약을 초래하거나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시배정 등의 제도 목적은 사업의 전제 요건 미이행,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등 예산의 집행가능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사전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지정요건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외없이 예산을 배정하거나 집행보류를 해제할 경우 자칫 법령상 전제요건 및 사업 제반요건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일례로 2023년 산림청의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를 이유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2023년 5월 수시배정 사업에서 해제되었음에도 토지매수 협의 지연으로 건설보상비 예산 48억 5,000만원 중 48억 3,1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집행부진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전액 배정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서는 이런 사례를 고려하여 사업 지연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이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음¹⁶⁾.

기획재정부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 확정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현재 수시배정배정유보·집행 보류의 구체적인 요건을 예산집행지침에 규정하여 엄격하게 운영 중이라는 입장임.

둘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수시배정·배정유보·집행유보 등의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은 정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부 내부 절차이므로 결산 심사 등을 통한 사후적 통제가 바람직하고, 배정유보·집행보류 등은 예산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수시배정 등 사유의 국회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집행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바,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다만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수시배정 등 사유의 국회 제출은 사전보고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예산집행 권한을 침해한다기보다는 수시배정 등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용 내역은 분기별로 국회

1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2024. 8.

에 의무적으로 제출¹⁷⁾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시배정 등의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정부의 예산 집행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참고로 수시배정제도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배정 예산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제18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11건¹⁸⁾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만료폐기 또는 대안반영폐기¹⁹⁾ 되었음.

[수시배정내역 국회 제출 관련 폐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대수	대표발의자(의안번호)	상정일	내용	폐기사유
18대	오제세 의원(1812901)	2011. 11. 4.	수시배정내역 국회 제출	임기만료
19대	주승용 의원(1900666)	2012. 9. 12.	수시배정내역 국회 제출	임기만료
	김재윤 의원(1909448)	2014. 11. 6.	수시배정 요건 법률에 규정 수시배정내역 국회 제출	대안반영
	홍종학 의원(1912280)	2014. 11. 18.	수시배정내역 국회 제출	대안반영

1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총 11건 중 10건은 수시배정 제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1건(21대 국회, 윤영덕의원안)은 수시배정·배정유보·집행보류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

19) 수시배정 요건 법률 규정 및 수시배정내역 국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대안 마련시 반영되지 않음.

대수	대표발의자(의안번호)	상정일	내용	폐기사유
20 대	김현미 의원(2001219)	2016. 11. 3.	수시배정내역 국회 제출	임기만료
	김태년 의원(2001355)	2016. 11. 3.	수시배정내역 국회 제출	임기만료
	김종민 의원(2001985)	2016. 11. 3.	수시배정내역 국회 제출	임기만료
	홍의락 의원(2009066)	2017. 11. 10.	수시배정내역 국회 제출	임기만료
	박맹우 의원(2021499)	2019. 11. 8.	수시배정 요건 법률에 규정 수시배정내역 국회 제출	임기만료
21 대	양경숙의원(2115962)	2022. 9. 29.	수시배정 요건 법률에 규정 수시배정내역 국회 제출	임기만료
	윤영덕 의원(2115447)	2023. 2. 14.	수시배정·배정유보·집행보류 내역 및 사유 국회 제출	임기만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생략)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 ⑤ (생략)</u>	<u>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u>
<u><신설></u>	<u>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⑧ 제6항에 따른 예산 집행 보류 조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을 기한으로 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u>

문의처

02)6788-5147